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2021년 13일 (금)

남서울대학교

이윤현 교수

Contents

- 1 남북 검역법제화의 필요성/목적
- 2 남북 검역협력의 내용
- 3 남북 검역협력법제(안)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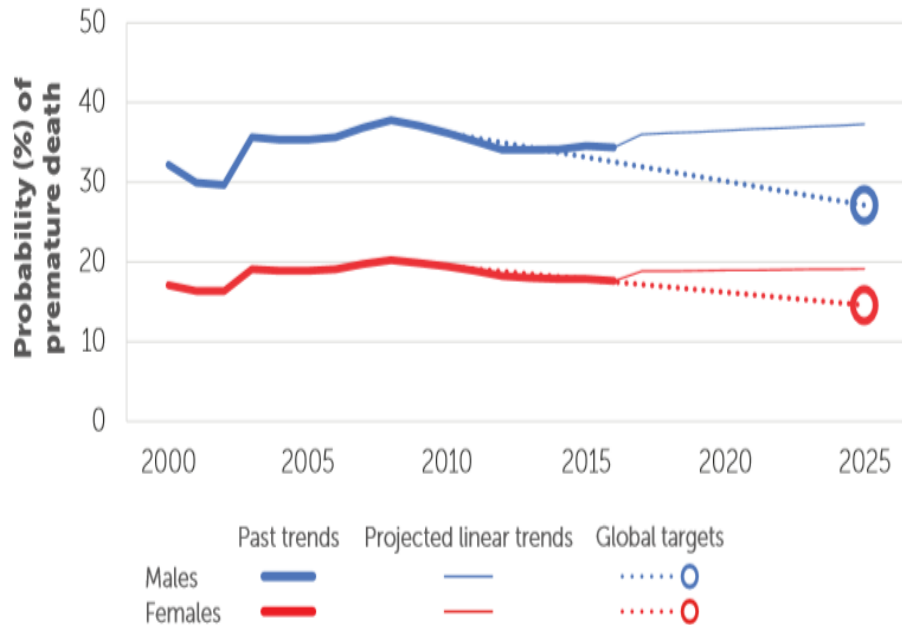
북한 주요보건지표

(WHO 202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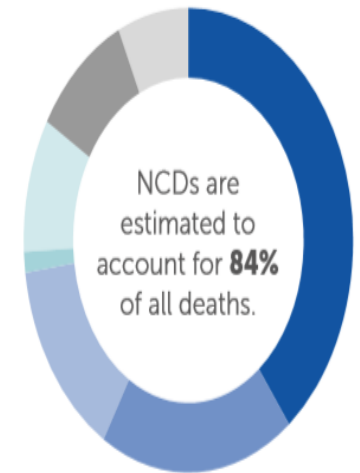
2016 TOTAL POPULATION: 25 369 000
2016 TOTAL DEATHS: 223 000

RISK OF PREMATURE DEATH DUE TO NCDs (%)*



PROPORTIONAL MORTALITY*












- ▶ 40% Cardiovascular diseases
- ▶ 19% Cancers
- ▶ 14%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 ▶ 1% Diabetes
- ▶ 9% Other NCDs
- ▶ 9% Communicable, maternal, perinatal and nutritional conditions
- ▶ 7% Injuries



북한 주요보건지표

(WHO 2021)

28 400 LIVES CAN BE SAVED BY 2025 BY IMPLEMENTING ALL OF THE WHO "BEST BUYS"

		NATIONAL TARGET SET		DATA YEAR	MALES	FEMALES	TOTAL
MORTALITY*							
	Premature mortality from NCDs	✓	Total NCD deaths	2016	94 100	92 000	186 100
			Risk of premature death between 30-70 years (%)	2016	34	18	26
	Suicide mortality	-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 000 population)	2016	-	-	11
RISK FACTORS							
	Harmful use of alcohol	✓	Total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adults aged 15+ (litres of pure alcohol)	2016	7	1	4
	Physical inactivity	✓	Physical inactivity, adults aged 18+ (%)	2016
	Salt/Sodium intake	✓	Mean population salt intake, adults aged 20+ (g/day)	2010	10	9	10
	Tobacco use	✓	Current tobacco smoking, adults aged 15+ (%)	2016
	Raised blood pressure	✓	Raised blood pressure, adults aged 18+ (%)	2015	19	19	19
	Diabetes	✓	Raised blood glucose, adults aged 18+ (%)	2014	6	7	6
	Obesity	✓	Obesity, adults aged 18+ (%)	2016	6	8	7
			Obesity, adolescents aged 10-19 (%)	2016	10	5	7
	Ambient air pollution	-	Exceedance of WHO guidelines level for annual PM2.5 concentration (by a multiple of)	2016	-	-	3
	Household air pollution	-	Population with primary reliance on polluting fuels and technologies (%)	2016	-	-	89

북한 주요보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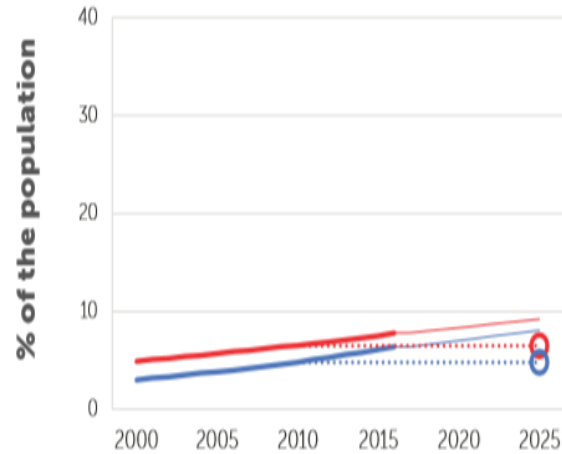
(WHO 2021)

SELECTED ADULT RISK FACTOR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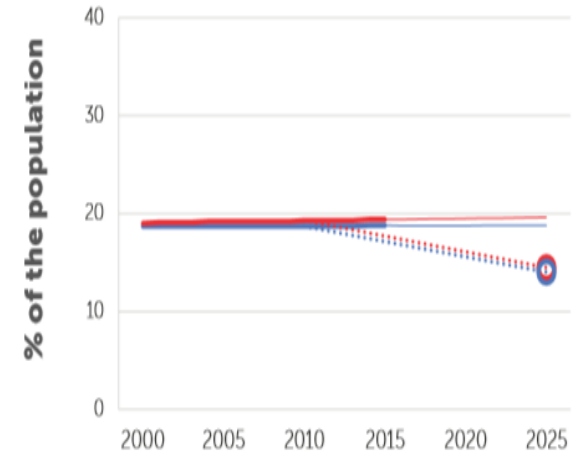
CURRENT TOBACCO SMOKING

NO DATA AVAILABLE

OBESITY



RAISED BLOOD PRESSURE



Past trends Projected linear trends Global targets

Males — — ○

Females — — ○

북한 백신역량

Gavi의 지원을 받아 북한, 유니세프, WHO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의 보장을 보임, 북한은 잘 조직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보유, 하루에 최대 330만 개의 백신 주사를 투여 가능, 북한 주민들은 이론적으로 10일 이내에 2,500만 명의 전체 인구에게 단일 주사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음(38 North, 2021. 8.5)

Figure 1. WHO/UNICEF estimates of DTP3 coverage in North Korea from 198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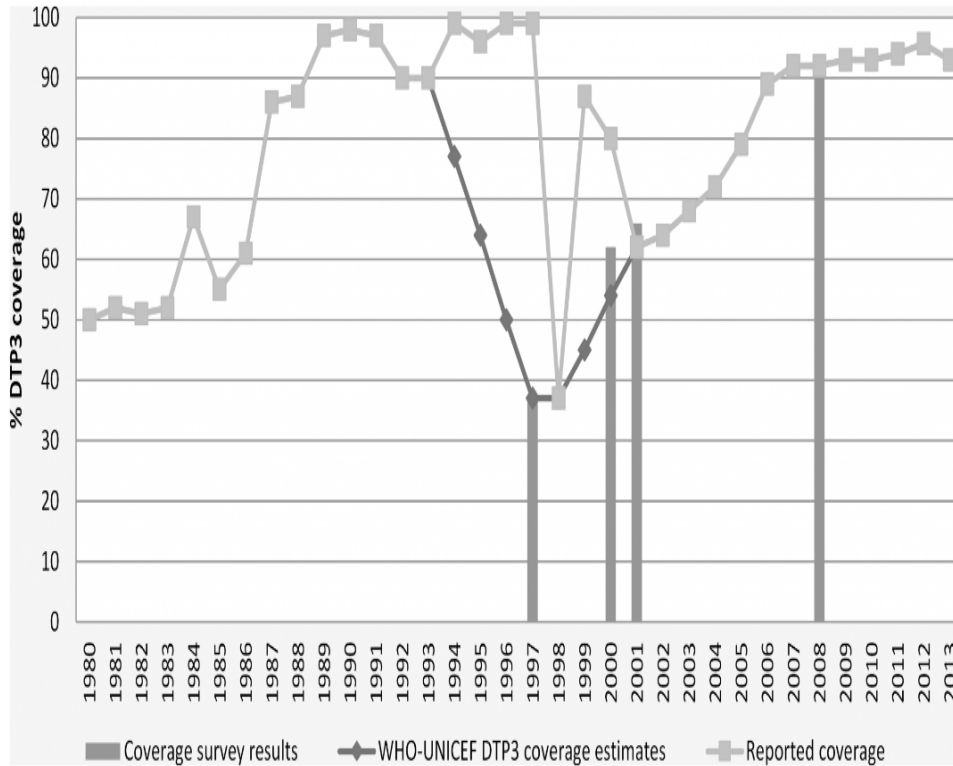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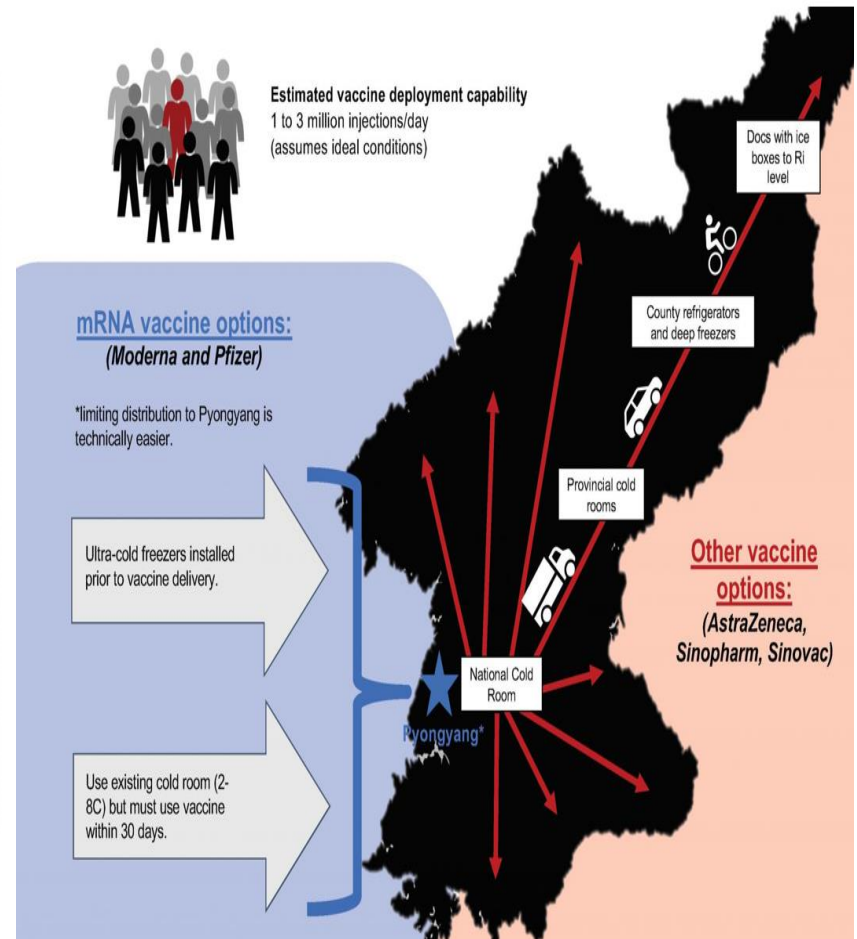


Figure 7. Estimated vaccine deployment capability with mRNA and other vaccine options.



(Source: "WHO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2020 global summary," World Health Organization, accessed August 3, 2021, https://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countries?country=dn&country%20code=DN&country%20code=DN&country%20code=DN&country%20code=DN; and John Grundy, Douglas Ann Piggot and David B. Lippman, "Public Health and

1장

남북검역협력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관련 방역현황

2021.8.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_안광일 아세안대표부 북한대사&한국 엠네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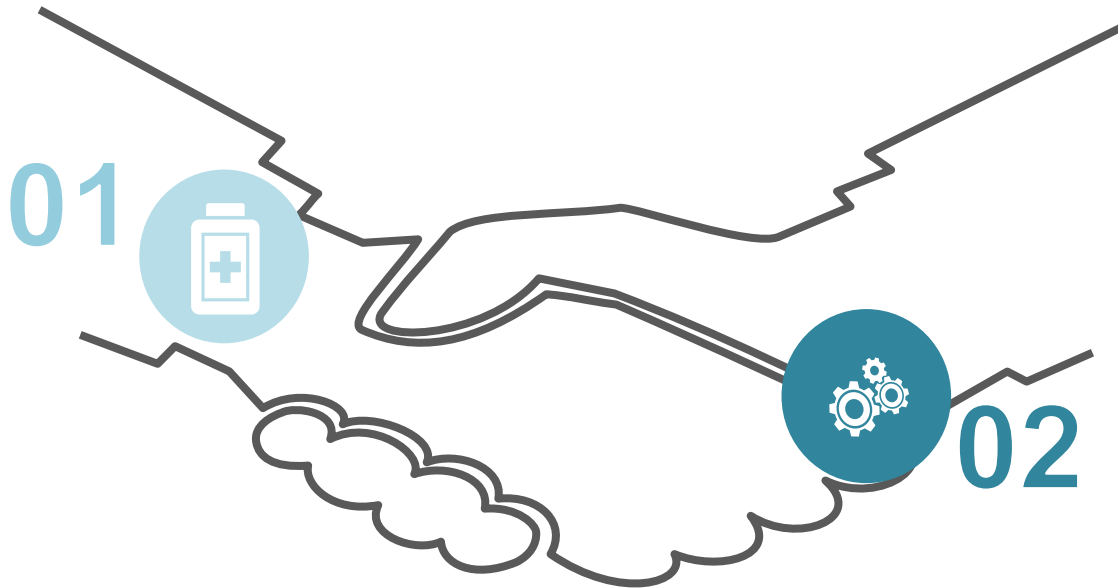
- ① 일부 국가에서 성급하게 방역을 완화해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는 상황,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함(북한대사)
- ② 북한은 현재 국가방역체계를 가동 중으로 물자 교역이 이뤄지는 북·중 국경도 봉쇄하고 있음(북한대사)
 -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국경, 지상, 공중, 해상에서 완전 차단봉쇄 해야 한다고 보도함 (노동신문)
- ③ 북한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격리는 따로 가두어 두고 있고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격리는 보통 20일 정도 격리를 하고 있음 (엠네스티 한국지부)
- ④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야에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방식 보통은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함 (한국엠네스티)

북한보건의료최근동향

한국엠네스티

-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집,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해야 함
- 북한 의료 분야는 공식적으로는 국영 의료 시스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관찰됨- 정년퇴직했거나 다른 이유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의사를 찾아가 따로 돈을 주고서라도 치료를 받음
- 북한은 무상진료 기반인 의사담당구역제 또는 호담당구역제를 통해 의사가 일정 구역의 가구를 맡아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음
-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0 인 이유는 진단장비 및 시약이 없기때문으로 추정(중앙시사매거진)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 공중보건안보사업 구축



01. 실효성 있는 남북 검역협력체계 구축

- 향후 북한을 경유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열차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감염병 보균자와 접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전파 가능성에 대비 남북한의 검역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

02. 검역법의 구체적인 전면개정사유

-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할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

세부 목표

- ① 남북 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관련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협력 방안 모색
- ② 남북 간의 검역 감염병에 대한 연구 동향 및 분단기 동·서독의 사례를 고찰하여 양국의 협력 법제도 방안 도출
- ③ 보건의료전문가, 법학, 수의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FGI, 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남북간 검역 협력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 파악
- ④ 보건의료전문가, 법학, 수의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북간 검역 협력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 파악
- ⑤ 문헌고찰,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합의서의 실효성 높은 남북한 검역 협력법제도화 방안을 제시

2장

남북 검역협력의 연구내용

연구 내용

남북한 검역관련 법령 비교·분석

- 상이한 검역 관련법 체계 비교
- 북한 검역법의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향 제시

검역관련 법제도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연구

- 검역 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한 검역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의 세부적인 조문 마련방안 검토
-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법제도화 방안 연구

검역 관련 기존 남북 합의서의 실효성 검토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외에 전염성 질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기본합의서를 마련하여 합의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해외검역법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해외검역 관련자료를 통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도입 및 적용방안 모색
- 해외 주요 국가(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검역 감염병에 관한 법령, 감염병의 종류, 검역 수행 부서, 검역대상, 검역조사 방법 및 체계 확인
- 향후 통일한국이 나아갈 검역 법령체계 구축 방향 제시

동·서독 분단기 동 안의 재난 협력 법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남북간의 검역 감염병에 대한 연구동향 및 분단기 동·서독의 사례를 고찰하여 양국의 협력 법제도 방안 도출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

- 온라인 자료
 - 국내·외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 오프라인 자료
 -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 FGI(표적집단면접)
- Delphi technique(전문가 자문)
 - 보건의료전문가, 수의학, 법학 전문가
 - 통일부, 외교부, 입법조사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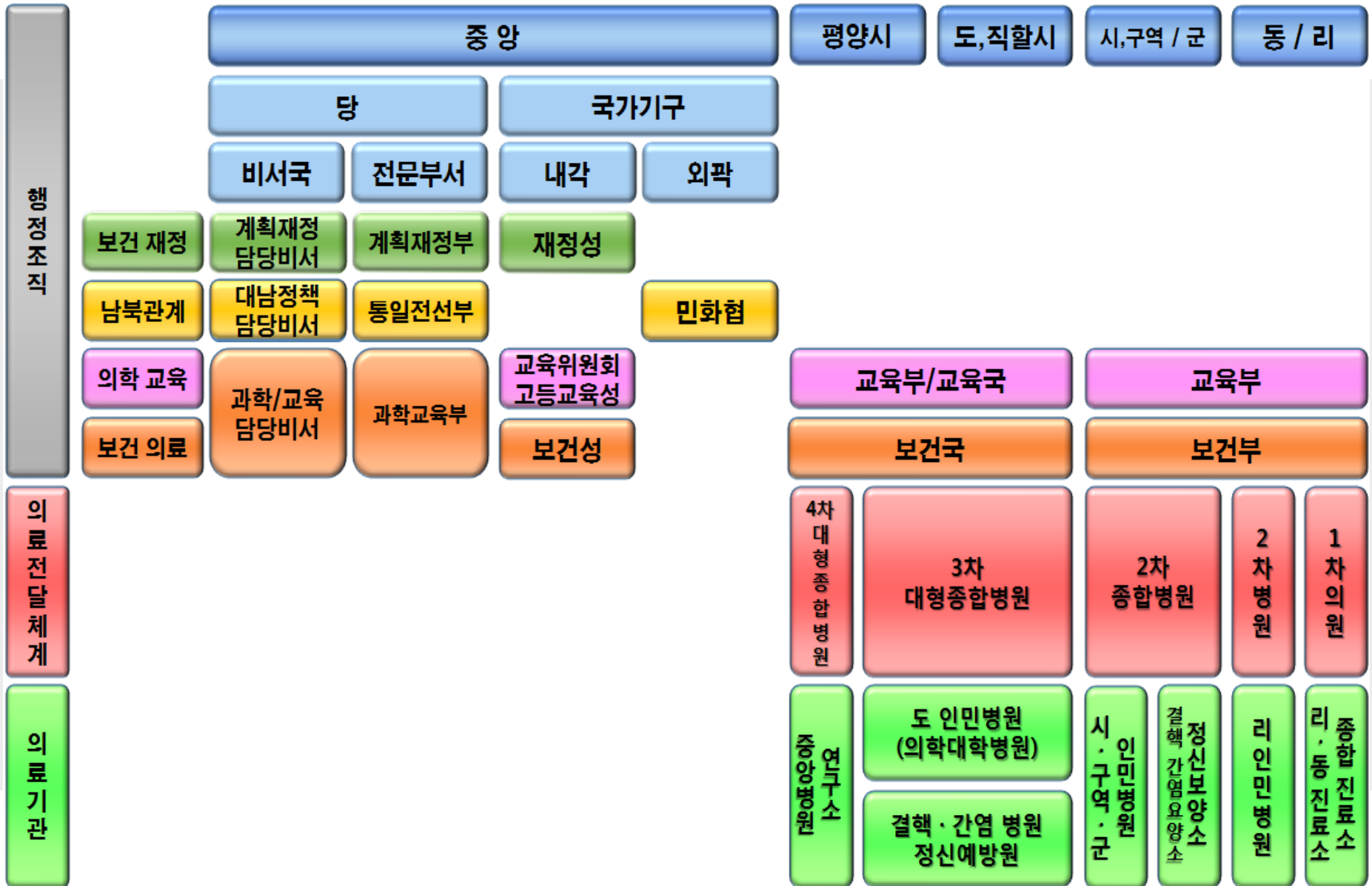


- 남북한의 검역 관련 논문 및 정책 제안 자료
- 국외 주요국가의 검역 감염병 관련 논문 및 정책 제안 자료
- 분단기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 법제 내용

- 남북한 검역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검역 협력에 따른 정보(설문) 수집

남북 검역협력법제(안)

북한 보건의료체계조직도



북한 감염병관리 조직체계

< 위생·방역 사업 >

< 연구 >

보건성
국가위생검열
원

철도성
철도위생방역소(중
앙)

의과학원
미생물연구
소

보건국(도)
위생방역소

국 철도위생방역소

의료담당
책임
지도원

의생방역
담당
책임
지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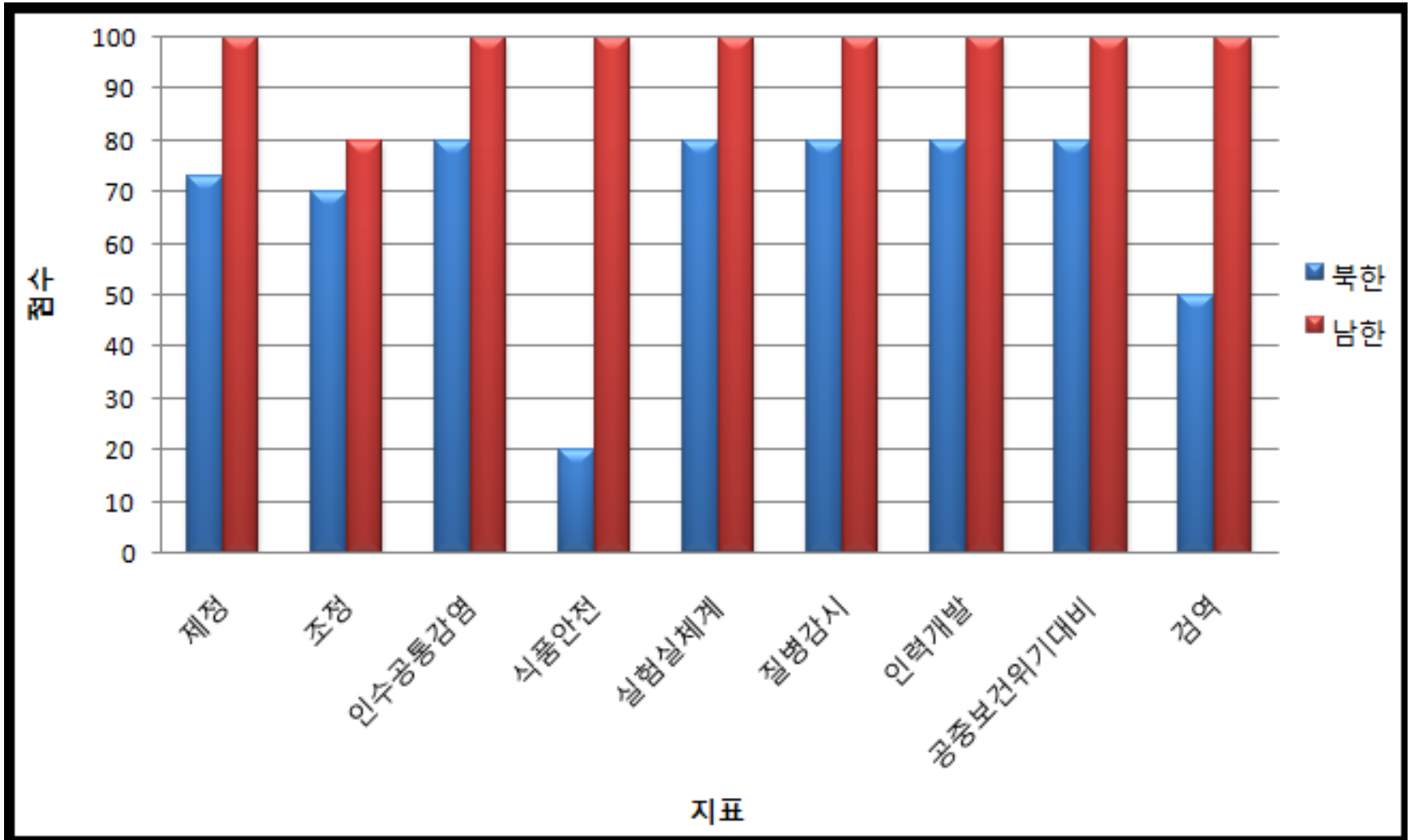
보건부(시)
지도원

북한의 방역업무

	중앙위생방역소	도위생방역소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대상	감염병 전담 중앙부처	시·군·구 감염병 전담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검역소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자에 대한 즉시 진단◆ cold chain◆ 검체운송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학, 실험, 소독 등에 신속대응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및 방역활동

SPAR기준 남북한 감염병관리체계 비교

(WHO 2019)



남북한 질병관리 및 검역체계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위생사업 및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진단 및 조사연구 등 질병통제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두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생 및 방역관리 기관으로 국가위생검열원, 지역 단위 위생방역소, 철도위생방역소가 있음 •1949년 방역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국가비상방역위원회,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가 위기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기준 : 예방접종률 99%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비용 무상 지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의 관련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 미만 영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남북한 질병관리 및 검역체계 비교

<p>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4년 전염병 예방법이 제정되어 1957년 시행 •2009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 개정됨 •WHO에서 제시한 IHR에 따름
<p>감시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의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존재(전수감시체계, 표본감시체계, 자발적 감시체계) •감염병 웹 통계 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 	<p>-</p>

남북한 질병관리 및 검역체계 비교

검역 감염 병대 응

- 거버넌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
- 수행기관: 13개 검역소에서 검역을 업무를 전담
- 인력: 검역관 및 역학조사관
- 검역조사: 검역관리지역에 출발하는 모든 운송수단은 집중 검역 시행
- 검역조치: 이송, 격리, 생활치료센터, 음압병상 입원 등
- 대상: 사람검역(검역소) 및 동식물검역(검역본부)이 별도의 조직에 의해서 시행됨
- 예방접종: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

- 거버넌스: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 수행기관: 항공, 국경, 해양검역소 및 수의검역소, 식물검역소 및 도위생방역소
- 인력: 검역의사, 검역원
- 검역조사: 신종감염병의 발생에 대한 대응·대비책이 발생국에 대한 국경 폐쇄와 평시에도 승객을 전수조사하는 등 강력함
- 검역조치: 검역전염병발생지에 온 사람들은 해당 질병의 잠복기 동안 격리(페스트 6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발진티푸스 12일, 재귀열 8일)하고 의학적인 검사를 하여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 조건에서 통과
- 대상: 사람, 동식물, 물품 등을 동일기관에서 검역
- 예방접종: 모든 여행객은 검역 과정에서 국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없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실시함

남한 육로입경절차

입경
(군사분계선 통행)

사람

- 입경자 검역(보건복지부)
- 인원 입경심사(법무부)
- 휴대품 검사 (관세청)
- 동식물 검역(농림식품부)

차량

- 사람 입경심사(법무부)
- 운전자 검역(보건복지부)
- 차량 통행심사(관세청)

남한 육로검역 절차

차량 및 열차 도착

- 차량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 차내 환자 발생 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
- 차량 내에서 검역질문서 작성



차량 및 열차 검역

- 열차 내 음식물, 오수 등 채취(재취물에 대한 검사결과 전염성질환 발견 시 역학조사)



승객 검역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필요 시 가검물 채취



검역대 통과

남한 공항검역 절차

항공기 공항 도착

항공기 검역 (검역관리지역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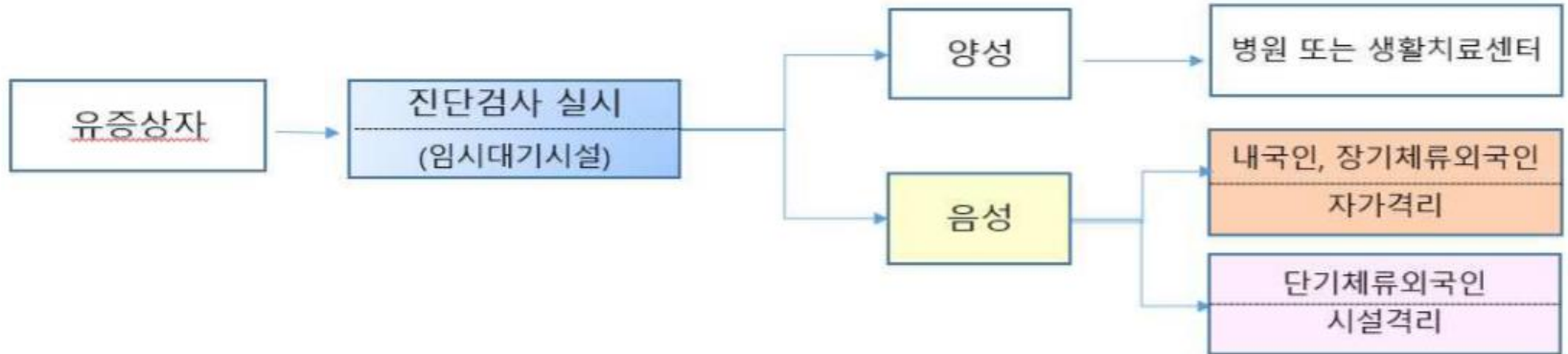
- 항공기 내 위생상태조사
- 감염병 매개체 유무조사
- 오수 적재 식품 검체 채취

승객/승무원 검역

- 발열감시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의심자의 경우)
- 주기장 검역(검역관리지역 입국 시)

남한 공항검역 절차

□ 유증상자



□ 무증상자

①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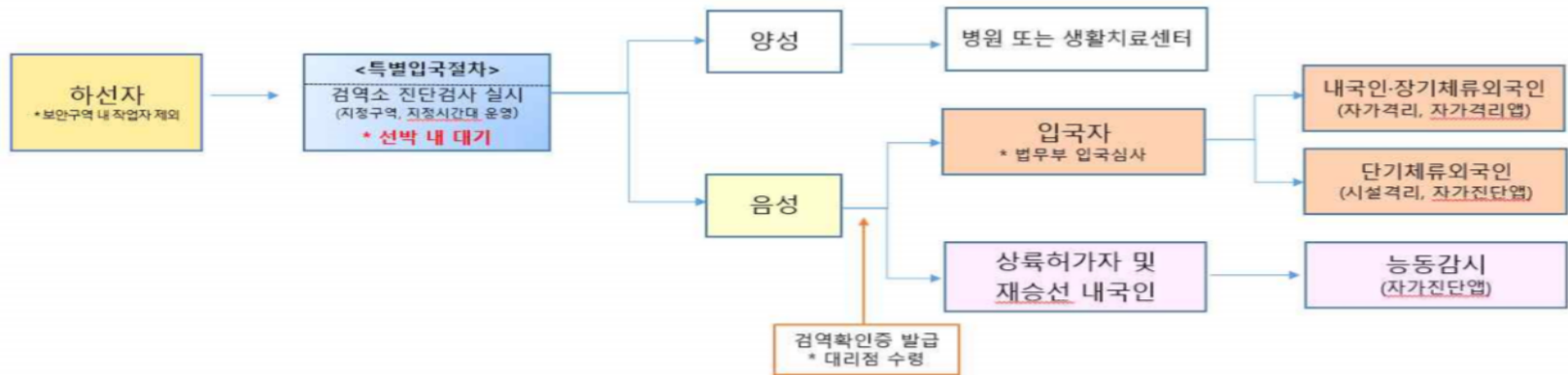


남한 공항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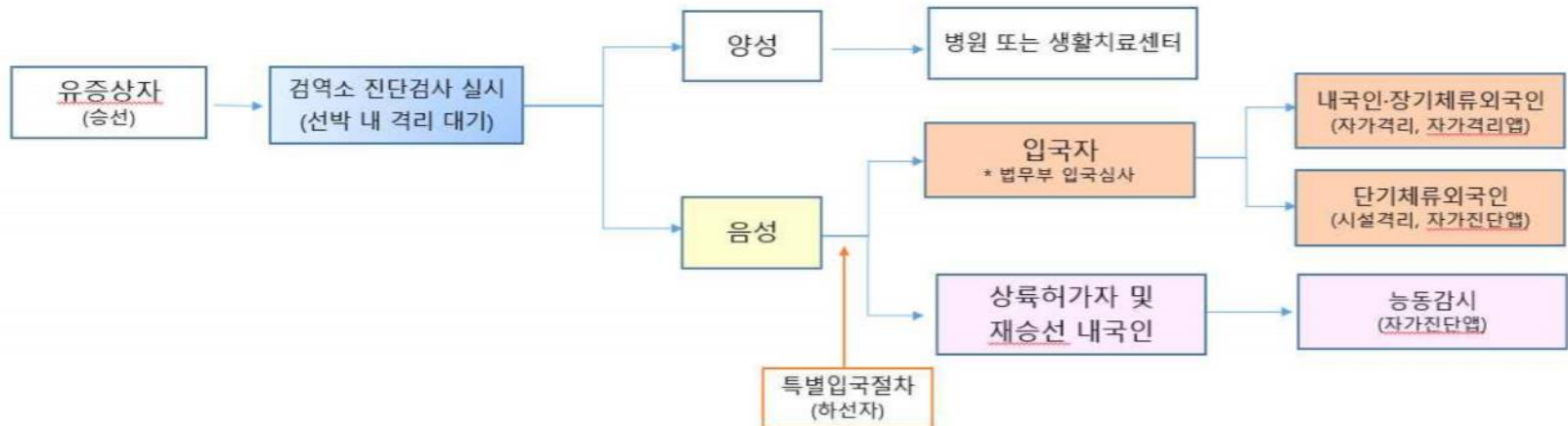
구분	입국장게이트 검역		주기장게이트 검역	
	비 검역관리지역	검역관리지역	특별검역(직항)	타겟검역(제3국검역)
검역 전 사전조치	-		-	- 사전 입국자 명단 파악
검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감지카메라 발열조사(필요시 건강상태질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조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조사 건강상태질문서 개별체온 측정 	
해당 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사람 간 전파력이 낮은 감염병 예) A, 황열, 콜레라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초래 가능 감염병으로 국내 유입 우려가 큰 검역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예) 메르스, 코로나-19, 에볼라, 페스트 등	

남한 선박검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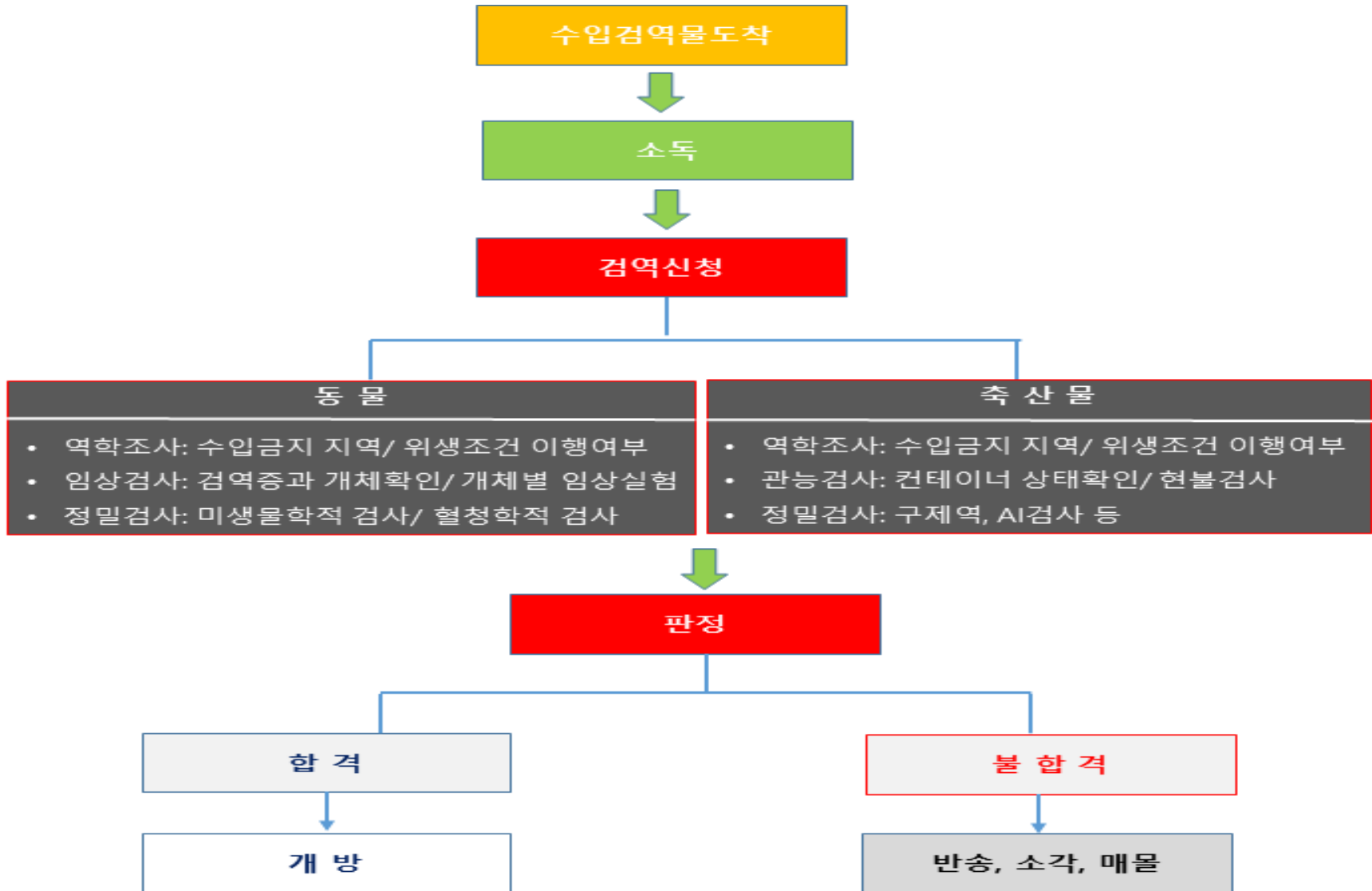
□ 무증상자



□ 유증상자



남한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검역법(남)과 국경위생검역법 비교(북)

	유사점	차이점
법의 구조	법의 순서는 대체로 법의 제정목적, 검역감염병의 정의, 권리의무, 검역장소, 검역시간, 국제예방접종, 신고 및 보고, 검역조사, 재검역, 검역조치, 벌 칙 등의 유사한 순서로 제정됨	남한은 '장, 조, 항, 목, 부칙' 순으로 법을 제정한 반면 북한은 단일하게 '조'로 제정됨
제정목적 등	<제정목적> "남북한은 모두 동일하게 제정 목적을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국민(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로 규정	<검역대상> 남한은 검역의 대상을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검역대상을 규정하지 않음
검역감염병의 종류	<검역감염병 지정절차> 남북한 모두 신종감염병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해외 유입 감염병은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검역감염병정의> 북한은 검역감염병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WHO의 지정 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공포로 정하고 있고 남한은 법령과 시행규칙으로 검역감염병의 정의를 함

검역법제 유사점 및 차이점

<p>검역대상 및 적용</p>	<p><출국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북한은 출국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점은 남한과 유사하다.</p> <p><검역대상> 북한은 검역의 대상이 사람, 운송수단, 물품이 포함된 것은 남한과 유사함</p>	<p><검역대상> 북한은 가공된 식품(가공된 상품)에 대한 검역도 이 법에 적용이 되는 점이 남한과 다름</p> <p><검역적용> 북한은 다른 국가의 조약이 있는 경우를 이를 따르도록 해 법에 우선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검역에 적용한 반면 남한은 검역의 대상은 주로 사람과 화물로 한정하고 있고 검역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나열함.</p>
<p>검역장소</p>	<p><검역이외 장소> 검역장소이외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는 북한은 운송수단이 도착한 장소로 정하고 있고, 남한은 부득이한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검역 장소는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사함</p>	<p><검역장소의 지정절차> 북한은 국경철도역, 국제공항 등으로 지정하고 있고 남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장소를 하도록 해서 검역장소를 정하는 절차에 차이가 있음</p>
<p>검역시간</p>	<p><검역대상별 검역시간> 북한은 검역시간을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도착한 즉시 실행하는 것은 남한과 같음</p>	<p><출국하는 운송수단과 도보 여행자에 대한 검역시간> 북한은 출발예정시간 전으로 정하고 남한은 도보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출국시에는 검역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음</p> <p><선박 검역시간> 북한에서 선박검역은 일몰에서 일출로 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남한 개정 전의 검역시간과 같으나 남한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상시 검역체제로 개정함</p>

검역법제의 유사점 및 차이점

<p>검역 조사</p>	<p><검역조사절차> 남북한은 사람의 검역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를 소지하고 건강신고서에 따라서 건강상태를 검진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필요한 문건을 요구할 수 있고 승무원의 건강상태나 운송수단 내 위생 상태를 검사함.</p>	<p><검역조사대상> 남한은 항공기, 선박, 육로검역조사로 구분하여 검역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람과 운수수단에 대해 구분하여 검역을 일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과 달리 사람 및 물품에 대한 검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경우는 문건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며 기준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정하고 있음</p>
<p>재검역</p>	<p><재검역 시행> 남북한 필요에 따라서 재검역을 시행하고 있음</p>	<p><재검역 절차> 북한은 국경위생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검역을 할 수 있고 위생검역을 끝낼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지에서도 검역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한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 재검역을 함</p>
<p>검역 조치</p>	<p><검역조치사항> 남북은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자를 격리시키거나 2)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며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3)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품을 소독 또는 매몰하거나 이동을 금지하고 4) 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를 해부 또는 화장 하게 하거나 5)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으로 전반적으로 남북한이 유사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음</p>	<p><오염물품의 처리> 북한은 운수수단에서는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고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위생처리를 한 다음 지정된 장소 폐기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남한은 폐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p>

동서독의 보건협정

<p>할슈타인 원칙의 시기 (1949년~196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데나워 수상을 중심으로 힘의 우위 정책이 지배- 서독은 동독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를 비우호적 행동 국가로 간주했으며 이들 국가와는 외교 관계 단절
<p>동서독 기본조약 (‘7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독 외국이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 동독의 제안으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규정(제7조 6항)- 서독은 조약 체결 후 약 18년 동안 동독에 총 1,044억 마르크 지원- (달러로 환산 시 약 576억 달러)
<p>동서독 보건 협정 (‘7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처 관리- 상대편 지역 방문 중 질병, 상해 발생 또는 중증 환자 등에게 상대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비 상업적인 의약품 소지 및 교환 가능
<p>제5, 6회 동서독 정상회담 (‘89년, ‘90년) 90년 통일독일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동서독 통합문제 논의• 경제, 환경,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양독 간 여행 자유화, 조약공동체 형성 등에 합의• 양독 간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전문위원회』 구성

경수로사업 검역협력관련 의정서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 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제9조 통관 및 검역

1.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통관절차에 따라 KEDO인원의 휴대품을 포함한 물자에 대한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본조 1항의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북한 내 출입지점과 부지 내에 통관 전에 물자 보관을 위한 장소(이하 "보세구역")를 KEDO와 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보세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지인수, 부지접근과 부지사용에 관한 의정서에서 KEDO와 북한간 합의한다.
3. 북한은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 KEDO인원에 대해 공급협정 제9조2항에 부합되는 물자의 반입·반출과 관련된 모든 세금과 관세를 면제하여, 부가금과 수수료는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4. 본 의정서 제6부속서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물품에 대한 반입규제를 위해 북한 세관당국은 진입지점이나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5. **북한으로 들어오는 KEDO인원과 물자는 적절한 검역증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관행에 일치되게 신속하고 무료로 검역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6. KEDO, 그 계약자, 하청계약자는 사업부지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없이 북한 통관절차에 부합되게 물자를 재 반출할 수 있다.
7. 본조의 어떠한 사항도 KEDO와 북한 간 법적지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특권·면제와 보호 제한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검역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 제2조 출입 통로의 지정을 통하여 남북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열차, 차량 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의 출입 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합의서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감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 운송수단, 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합의서 제4조 공업지구검역소 설치.는 공업지구 내에 반입, 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를 공업지구 내에 두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검역에 관한 합의서

합의서 제5조 검역원칙은 공업지구검역소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 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측 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으면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하는 대상에 대해 검역 요금을 받으며, 검역 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합의서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은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하고 검역기준에 합격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합의서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은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시행하고 검역기준에 합격한 대상에게만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며, 검역에서 합격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남북검역합의서(안)

<남북 검역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쌍방 간의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 운송 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교류협력사업, 친선방문, 투자사업,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쌍방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교류 및 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 등과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 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 통로를 따라 상대방으로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상대방으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쌍방을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사업관리 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2조 출입 통로의 지정

쌍방의 검역당국은 협의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 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 감염병 종류

검역의 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과 쌍방의 보건당국자가 협의하여 정한 감염병으로 한다.

제4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으로 들오거나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인원 2) 열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

3)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

4) 의약품, 혈액 및 혈장 5)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6) 다른 나라에서 위생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7) 시체를 넣은 관

8)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9)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정 전염병 혹은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지정 검역병해충

10) 기타 쌍방이 사전에 협의한 물품

3.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5조 검역소 장소

검역 장소는 쌍방의 검역 당국이 협의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남북한 도로경계점의 지정된 곳, 접경지역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국경통과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수단이 도착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 동물의 전염병과 식물의 병해충 발생으로 남북 양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 공동 검역 조사를 접경지역을 검역 장소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검역소 시간

쌍방의 검역 당국은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접경지역 내 또는 배에 대한 검역은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7조 검역원칙

1. 쌍방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쌍방 간의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열차, 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접경지역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동물의 전염병 및 식물의 병해충 발생으로 남북 쌍방의 국가에 충분히 전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남북 공동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4. 쌍방은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감염병 및 방역관련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통고 및 신고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 혹은 도보 여행자는 해당 운송수단 혹은 도보 여행자가 출발 전에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 당국에 운수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예정시간, 운수수단의 명칭과 국적, 승무원수, 위생상태, 적재화물의 종류와 수량, 출발한 나라 명칭,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10조 신고의무 및 조치

1. 남북한 사람이 대면할 경우에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면 전에 쌍방의 검역당국에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남북에 있던 동·식물이 상대 국가로 반출되거나 들어오는 경우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 혹은 병해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쌍방의 검역당국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 4)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남북검역합의서(안)

제11조 국제예방접종증명서

쌍방으로 입경하는 사람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쌍방 국가에서 발생 중인 동물 전염병이 있을 경우 교류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그 증명서와 함께 반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역증, 위생증명서 발급

1. 쌍방의 검역당국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2. 다른 나라로 나가려는 쌍방의 선박은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다음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는다.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은 배는 출항할 수 없다.
3. 쌍방을 통과하는 운송수단에는 쥐잡이증명서, 쥐잡이면제증명서 같은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21조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등

1. 쌍방의 검역 당국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병해충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2. 쌍방의 검역 당국은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 또는 병해충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제22조 검역료

위생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요금을 쌍방의 검역당국에 묻는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3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쌍방의 검역 당국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하여는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남북검역합의서(안)

제24조 벌칙

이 법을 어겨서 생명과 건강, 재산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는 남북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25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검역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6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4장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북한과 접경지역은 인체 감염병과 동·식물 감염병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의 공동 협력 및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 가능
-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통일의 마중물 효과 기대
- 감염병에 대한 협력 대응으로 민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통일 비용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
- 귀순, 나포, 남북간 접촉자 증대에 따른 구체적 검역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선제적 감염병 예방 강화가 기대

- 「검역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검역 및 방역기능 강화로 효과적인 보건안보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
- 북한의 감염병 예방, 검역 및 방역시스템의 지원전략개발에 활용
- 북한과 민관 검역 및 방역협력 체계 구축 자료로 활용
- 북한에 보건의료 기술 지원 토대 자료로 활용
- 남북한이 국제보건안보체계에서 다자간 검역협력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남북한 검역협의를 도출하는데 활용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